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 그리고 규정 준수를 확실히 하도록 일차적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한 언제라도 불만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보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불만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5 CCR 제 4600-4670 조항 및 관련 행정 규정에 명시된 일관적 불만 처리 시스템 채택해야 한다.

UCP 에 적용되는 불만제기 사항들 :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UCP)는 다음과 같은 불만 사항들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 성인 교육; 방과 후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농업 경력 기술 교육; 주정부 기술직 및 기술 교육, 직업 기술 및 훈련 프로그램; 연방 직업 기술 교육; 탁아 및 발육 프로그램; 보충 교육;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연방법, 이주자 교육; 리지날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안; 학교 안전 계획안; 캘리포니아 주정부 유아원 프로그램; 지방 교육 기관의 면허 취득을 면제받은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문제; 및 교육법 64000(a)에 준하여 지방 콘트롤 기금 포물라를 통해 지원되지 않는 기타 교육구가 실시하는 모든 주정부 카테고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에 관해 교육구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제기.
2.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직원 또는 기타 참여인이 그 사람의 실질적 또는 인종이나 민족, 피부색, 조상, 국적, 출신 국가, 이민 신분, 민족 그룹 정체성, 나이, 종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혼인 상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적 정체성, 표현 또는 유전학적 정보 또는 교육법 200 이나 220, 행정법 11135 또는 형법 422.55 에 인지된 특성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특성을 갖는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에 기초한 주정부 재정 지원으로 기금을 직접 받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제기. (5 CCR 4610)
3. 학교 교정에서 모유 수유, 유아 모유 수유, 또는 기타 모유 수유와 관련된 학생의 필요 해결을 위해 수유 중인 학생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요건에 대한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222)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4. 육아 휴직 규정, 이전 등록 학교로의 복귀 권리 또는 원하는 경우, 대안 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이 주정부 및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졸업 요건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 5 년차 등록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법 46015 에 명시된 임신 또는 육아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46015)
5.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해 학생에게 비용, 보증금 또는 기타 요금 부과 금지에 관해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5 CCR 4610)
6. 학부모/후견을 위한 지방 콘트롤 기금 포물라 예산 개요 수립을 포함하여 지방 콘트롤 및 책무안 (LCAP) 의 실시와 관련되어 적용되는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52075)
7. 특정 연방 및/또는 주정부 카테고리 기금을 위해 통합 신청서에 요구된 바와 같이,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안 수립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64000-664001, 65000-65001)
8. 교육법 51225.2 에 정의된 위탁 청소년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대신하여 학생의 배치 결정;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연락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교육구의 책임; 다른 학교, 교육구 또는 국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코스에 대한 학점 부여; 학교 또는 기록 이전; 또는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졸업 요건 면제 부여에 관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9. 미합중국법 42 (42 USC) 11434a 조항에서 정의된 대로 고등학교 2 년 이후 교육구로 전학온 학생으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 교육법 49701 에 정의된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교 학생으로 최근에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 군인 가정의 아동 또는 교육법 54441 에 정의된 이주 노동자 학생 또는 교육법 51225.2 에 정의된 뉴커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 학생으로 고등학교 3 년에 또는 4 년에 교육구로 전학온 학생을 대신하여 또는 학생 당사자가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졸업 요건 면제 부여에 대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51225.1)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10. 미합중국법 42 (42 USC), 11434a 조항에 정의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 학생, 교육법 49701 에 정의된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교 학생, 군인 가정의 아동, 교육법 54441 에 정의된 이주 노동자 학생 또는 교육법 51225.2 에 정의된 뉴커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 학생으로 다른 교육구 또는 국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교과목 학점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한 요건에 관해 학생을 대신하여 또는 학생 당사자가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51225.2)
11. 어느 학기에서 한 주 이상 학과 내용에 대한 교육없이 또는 지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이전에 만족스럽게 완료한 과정에 9-12 학년 학생의 배정을 금지하는 교육법 51228.1 및 51228.2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51228.3)
12.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체육시간(분수)의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51210, 51223)
13. 불만제기인이나 불만 처리 절차의 다른 참여자 또는 본 방침과 관련된 위반을 발견하였거나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14. 교육구 방침에 명시된 기타 불만제기.

주장의 본질에 따라 대체적 분쟁 해결 (ADR)이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위원회는 알고 있다. 중재와 같은 ADR은 한 명 이상의 학생 그리고 어떤 성인도 포함되지 않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이 포함된 불만제기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도록 강요되는 합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불만 해결을 위해 중재를 제안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ADR의 사용이 주 및 연방 법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구는 보복으로부터 모든 불만제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비밀은 법으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악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해,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제기인의 신원 및/또는 불만제기 주체가 해당 불만제기인과 다른 경우, 적절한 경우 그리고 불만 처리의 원래 모습이 유지되는 한, 관련인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 UCP 불만제기에 포함된 경우, 교육구는 비-UCP 주장을 적절한 직원 또는 기관에 의뢰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 교육구 UCP 를 통해 UCP-관련 주장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본 방침에 명시된 단계(순서)와 일정 그리고 수반되는 행정 규칙들을 포함하여 UCP 와 관련된 현행법 및 관련 요건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익히도록 교육구 직원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5CCR 4631 및 4633 준수에 요구되는 조사 동안에 취한 조치 및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각 불만제기 및 관련된 후속 조치의 기록을 보관(유지)해야 한다.

비-UCP (UCP 에 해당되지 않는) 불만제기

다음의 불만제기들은 교육구 UCP 에 저촉되진 않지만, 그러나 특정 기관에 의뢰되어야 한다:
(5 CCR 4611)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카운티 사회 복지부(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보호 서비스 부서(Protective Services Division) 및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에서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이 보건 및 안전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불만제기는 사회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의뢰하고, 허가가 면제된 시설물에 대해선 적절한 아동 발달 지역 행정관(Child Development regional administrator)에게 의뢰해야 한다.
3. 부정 행위(사기)를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법률, 감사 및 준수 부서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의안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합의안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에 근거한 적절한 무상 공립 교육 거부를 주장하는 특수 교육 불만제기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5CCR 3080, 3200-3204; 교육법 섹션 33315(a)(2))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급식 계산, 상환할 수 있는 급식 그리고 아동 및 성인의 자격과 관련된 아동 영양에 관한 불만제기는 5CCR 섹션 15580-15584 에 명시된 대로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 의해 직접 조사되고 응답되어야 한다.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하여 행정 규정(AR) 4030 - 고용 차별금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육구에 의해 조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교과서 또는 학습 자료물의 충분성, 학생 또는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이 되는 응급 또는 비상 시설물들의 상태, 교사 결원 그리고 오배치, 또는 면허가 면제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유아원 프로그램의 보건 및 안전 위반과 관련된 불만제기는 AR 1312.4 -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교육법 8235.5, 35186)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법적 참조: 교육법 200-262.4; 8200-8498; 8500-8538; 18100-18203;
32280-32289; 33380-33384; 35186; 44500-44508; 46015;
48853-48853.5; 48985; 49010-4901; 49060-49079; 49069.5;
49490-49590; 49701; 51210; 51223; 51225.1-51225.2;
51226-51226.1; 51228.1-51228.3; 52060-52077, 52075;
52160-52178; 52300-52462; 52500-52616.24; 54000-54029;
54400-54425; 54440-54445; 54460-54529; 56000-56865;
59000-59300; 64000-64001; 65000-65001
정부법 11135; 12900-12996 조
보건 및 안전법 104420 조
형법 422.55; 422.6
규정법, 타이틀 2 11023 조
규정법, 타이틀 5 3080; 4600-4687; 4900-4965
미합중국법 타이틀 20, 1221; 1232g; 1681-1688; 6301-6576; 6801-7014;
7101-7184; 7201-7283g; 7301-7372; 12101-1221
미합중국법 타이틀 29, 794 조
미합중국법 타이틀 42, 2000d-2000e-17; 2000h-2-2000h-6; 6101-6107
연방 규정법, 타이틀 28, 35.107 조
연방 규정법, 타이틀 34, 99.1-99.67; 100.3; 104.7; 106.8; 106.9; 110.25 조

방침 채용 11/17/1992
방침 개정: 12/17/2002; 11/03/2010; 03/11/2014; 04/15/2014; 05/06/2014;
04/05/2016; 10/18/2016; 08/15/2017; 02/06/2018; 05/01/2018; 06/04/2019

(이전에 BP 1312)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교육위원회가 다른 교육구 방침에서 구체적으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관적 불만제기 일반 절차 (UCP)는 BP 1312.3 에서 구체화된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준법 사무관들

교육구는 불만제기 사항들에 대해 교육구의 대응을 조정하고 주 및 연방 민권법을 준수할 책임에 관해 아래의 확인된 인사(들), 직책(들) 또는 부서(들)을 지정한다. 또한 이 인사(들), 직책(들) 또는 부서(들)은 AR 5145.3 에 명시된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관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책임을 가진 준법 사무관으로서 복무한다. 이 준법 사무관(들)은 불만제기의 접수 및 조사 조정하며 교육구가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Kelly King 박사, 교육 서비스 - 부교육감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x1208
kking@gusd.net

Lena Richter 박사, 카테고리칼 프로그램 -디렉터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x1457
lrichter@gusd.net

불만제기를 받은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른 준수 사무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준수 사무관이 위임되는 경우, 적용시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인과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만제기에 대한 공정한 조사 또는 해결에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이해상충이 있는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 사건에 배정되어선 안된다. 준법 사무관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공정하고 편견없이 사건을 조사할 준법 사무관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불만 조사 방법을 결정할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충원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위임된 직원이 위임된 불만제기 이슈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불만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할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훈련은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현재의 주 및 연방법과 규칙, 주장하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포함하여 불만제기 사건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적용되는 절차,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적용되는 표준 그리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다뤄야 한다. 위임된 직원은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결정된 법률 자문인과 접촉할 수 있다.

준법 사무관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행정관은 조사를 하는 동안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준법 사무관 또는 행정관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 교육감 대리인 또는 적절한 경우 학교 교장과 상담해야 한다. 임시 조치는 준법 사무관이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거나 교육구가 최종 서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공고문

교육구의 UCP 방침 및 행정 규칙들은 직원 휴계실 및 학생회가 관리하는 미팅 룸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모든 학교와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교육법 234.1)

추가로,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학생, 직원, 교육구 학생의 학부모/후견인, 교육구 자문위원회 위원, 학교 자문위원회 위원, 적절한 사립학교 임원 또는 대표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교육구의 UCP 서면 공고문을 매년 제공해야 한다. (SCCR 4622)

이 공고문은 다음의 언급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구는 교육위원회 방침을 수반하는데 있어 "UCP에 적용되는 불만제기" 섹션에서 판별된 대로 UCP와 관계되어 보호되는 모든 그룹 및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회롱, 위협 또는 약자 괴롭히기의 금지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언급.
2. 학생 비용 또는 지방 콘트롤 및 책무안에 대한 불만제기는 불만제기인이 불만제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언급.
3. 공립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교과과정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교육적인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언급.

지역사회 관계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

4. 학생 비용에 대한 불만 사항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일 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언급.
5. 교육구는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및 51225.2 그리고 불만제기 절차에 명시된 대로 위탁 가정 청소년, 노숙 학생, 과거 청소년 법원 학교에 다녔으나 현재 공립 학교에 등록한 학생, 군인 가족의 아동, 이주자 학생 및 뉴커머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민자 학생의 교육적 권리에 대해 표준화된 통지서 게시에 대한 언급.
6. 불만을 접수받도록 지정된 책임 직원(들), 직책(들) 또는 부서(들)의 신원.
7. 불만제기는 교육구의 UCP 에 따라 조사되고, 서면 결정서는 불만제기인과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은 한 불만제기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진다는 언급.
8. 불만제기인은 교육구의 결정을 받고 15 일 이내에 불만제기 원본 및 교육구 결정의 사본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항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교육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언급.
9. 가치분, 접근금지 명령 또는 해당될 경우, 주 또는 연방 차별금지법에 따라 가용할 수도 있는 기타 해결책이나 명령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민사 법률 상의 해결책에 대해 불만제기인에게 조언한다는 언급.
10. 교육구의 UCP 사본은 무료로 가용하다는 진술.

보건 및 안접법 섹션 1596.7925 에 준하여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에 적절히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 교육 기관 각 학교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유아원 프로그램 클래스에 부모, 후견인, 학생 및 교사에게 알리는 다음의 두 가지 모두를 게시해야 한다:

- a) 캘리포니아 규정법 타이틀 5 하의 보건 및 안전 요건은 HSC 섹션 1596.7925 에 준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 유아원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 b) 불만을 접수하기 위한 서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연례 공고문, 준법 사무관(들)에 대한 완전한 연락 정보 그리고 교육법 221.61 에 의해 요구되는 타이틀 IX 와 관련된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가용한 경우, 교육구에서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영어 미숙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포함되어 모든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UCP 와 관련된 교육구 방침, 규정, 서식, 및 공고문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정 교육구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15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 이외 한 종류의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경우, UCP 와 관련된 교육구 방침, 규정, 서식, 및 공고문은 교육법 234.1 및 48985 에 따라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기타 모든 경우, 교육구는 영어에 미숙한 학부모/후견인을 위해 관련된 모든 UCP 정보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불만제기 접수

불만제기는 준법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관은 각각의 조항 및 접수 도장이 찍힌 날짜와 함께 불만제기 수령 일지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불만제기는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불만제기인이 서명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상태로 인해 서면으로 자신의 불만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은 불만제기 접수에서 그를 도와야 한다. (5 CCR 4600)

불만제기는 또한 해당되는 다음 규칙들에 의거해 접수되어야 한다:

1. 교육 위원회 방침("UCP 의 적용을 받는 불만" 부문의 #1 항)에 명시된 프로그램들의 운영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에 교육구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은 개인, 공립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5CCR 4630)
2. 학생 비용, 보증금 및 수수료 부과 금지 및 LCAP 과 연관된 요건에 관한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은 증거를 제시하거나 비준수 주장을 보강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학생에게 불법적으로 비용 부과를 금지하는 법 위반에 대한 불만제기는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접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2075; 5 CCR 4630)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3.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하거나 사람들 또는 개인 또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 불법적인 차별을 겪었다고 믿는 사람에 의해서만 접수될 수 있다.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전 또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 사실들을 불만제기인이 처음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 접수 시기는 불만제기인이 제출한 서면 요청서에서 밝힌 연장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최대 9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CCR 4630)
4.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가 익명으로 접수된 경우, 준법 사무관은 제공된 정보의 구체성 및 신뢰성 그리고 그 주장의 심각성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적절한 다른 대응을 추구해야 한다.
5.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관한 불만제기인 또는 주장되는 피해자가 불만제기인이 아닌 경우 기밀 유지를 요청할 경우, 준법 사무관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교육구의 조사 수행이나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능력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음을 불만제기인 또는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기밀 유지 요청을 존중하면서 교육구는 조사에서 합리적인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불만제기인의 요청에 일관성을 갖고 해결/응답해야 한다.

HSC 1596.7925 에 준하여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사안에 관한 UCP 불만제기는 다음 언급을 포함해야 한다:

1.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2.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사안에 관한 불만이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는 해결을 위해 적절한 지방 교육 기관 담당자에게 시기적절히 그러나 근무일로 10 일이 초과하지 않고 제출해야 한다.
3.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사안에 대한 불만제기는 익명으로 접수될 수 있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불만제기인은 응답 요청을 표명할 경우,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불만제기 서식에는 응답이 요청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법의 48985 항이 달리 적용할 경우, 요청이 있는 경우, 답변 및 보고서는 영어 및 불만제기서가 접수된 해당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사안에 대한 불만제기 서식은 불만제기서를 접수할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은 불만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만큼의 글을 첨부할 수 있다.

지역사회 관계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

중재절차

불만제기를 받은 후 업무일로 3 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중재절차 사용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포함되었고 어떠한 성인도 포함되지 않은 불만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주장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절차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위험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절차를 제안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동의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이 절차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한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법 사무관은 중재인이 관련된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준법 사무관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언제라도 이 비공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만일 법의 범위 안에서 중재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이같은 시간 연장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사용은 교육구의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일정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중재가 성공하고 불만제기가 철회된다면, 교육구는 중재를 통해 합의된 사안들에 한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재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육구는 본 행정 규정에 명시된 후속 조치들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

준법 사무관의 불만제기 수령하고 업무일로 10 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를 시작하고 업무일로 1 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인 및/또는 불만제기인의 대리인에게 불만제기에 포함된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불만제기에서의 주장을 보강할 증거 또는 증거로 이어질 정보를 준법 사무관에게 제출할 기회를 불만제기인 및/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조사 기간 동안 언제라도 이같은 증거 또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지역사회 관계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

조사 수행에서, 준법 사무관은 가용한 모든 서류들을 수집해야 하며 불만제기와 관련된 조사 과정 동안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추가 증거나 정보를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기록, 노트 또는 언급들을 검토해야 한다.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가능한 모든 증인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관련된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접근 가능한 타당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준법 사무관은 양 당사자에게 조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를 조사하기 위해, 준법 사무관은 주장되는 피해자, 가해자 및 관련된 다른 증인들을 사적이며 개별적으로 그리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면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직원 또는 법적 자문인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불만제기인이 교육구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다른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비협조, 거부 또는 달리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주장을 보강할 증거 부족으로 불만제기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하게, 피고발인이 교육구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다른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비협조, 거부 또는 달리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 범위반이 발생하였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하게 구제책을 부여하는 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31)

법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기록과 다른 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방해해선 안된다. 조사에서 교육구에 의한 비협조나 거부하는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 범위반이 발생했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한 구제책 부여 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21)

HSC 1596.7925 항에 준하여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사안에 관한 UCP 불만: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 또는 교육구 교육감 대리인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1. 자신의 권한 내에서 문제의 조사를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조사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시작된다.
2.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유효한 불만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만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로 30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불만제기자에게 불만 해결책에 대한 보고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근무일로 45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이 이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는 또한 교육구 교육감 대리인에게 동일한 기간 내에 동일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최종 판결에 대한 타임라인

불만제기인과 서면 합의로 연장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은 교육구에서 불만제기를 받고 일력으로 60 일 이내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불만제기를 받고 30 일 안에 준법 사무관은 하기의 “최종 서면 결정” 섹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준법 사무관의 결정에 불만스러운 경우, 불만제기인은 업무일로 5 일 이내에 그 불만을 서면으로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차기 교육위원회 정기모임에서 숙고하거나 불만제기에 반듯이 응답해야 할 60 일의 시간 제한을 맞추기 위해 특별 교육위원회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사건은 비공개 모임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준법 사무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경우, 교육위원회는 불만제기 비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불만제기를 심리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교육구가 불만제기를 처음 받은 후 일력으로 60 일 또는 불만제기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 기간 안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5 CCR 4631)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해, 상대방은 불만 제기인에 의해 합의된 타임라인의 연장을 통보받아야 하며, 교육구 최종 서면 결정서가 발송되며, 불만제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결정이 불만스러운 경우, 교육위원회에 불만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

최종 서면 결정

모든 불만제기에 대한 결정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5 CCR 4631)

1. 사실에 대한 판정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였다. 사실에 대한 결정 도달에서, 다음의 요인들이 고려되었다:
 - a. 증인들의 증언
 - b. 관련된 사람들의 상대적 신뢰성
 - c.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이 사건을 대하는 방식
 - d. 주장되는 행위에 대한 관련 서류 또는 다른 증거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 e. 과거 사례들에서 제기된 가해자가 취한 유사한 행위
 - f. 불만제기인에 의해 제기된 과거의 거짓 주장들
2. 법에서의 결론
 3. 불만제기에 대한 처분
 4. 이러한 처분의 논리적 근거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이에 대한 처분에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보복 또는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대적 환경 존재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숙고에 포함될 수 있다:

- a. 이러한 비행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b. 비행의 유형, 빈도 및 지속 기간
 - c. 주장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 d. 이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숫자 및 이 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벌어졌는가
 - e. 학교 사이즈, 사건 장소 및 이 사건이 벌어졌던 전후상황
 - f. 학교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 기타 사건들
5. 불만제기에서의 주장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학생 비용 불만제기에 대해 교육법 49013 및 5 CCR 4600 에 있는 구제 방법에 맞게 취했거나 취해질 교정 조치들.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제기에 대해 법으로 요구되는 통지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지역사회 관계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

- a.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교정 조치.
 - b. 불만제기인 또는 불만제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제안되거나 제공되는 개별적인 구제 방법. 그러나 이 정보는 가해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 c. 적대적인 환경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취한 체계적인 조치
6. 교육구의 결정을 일력으로 15 일 안에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항소할 불만제기인 및 응답자의 권리 그리고 이같은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통보

결정에는 재발이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절차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일어나는 문제 보고 절차들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교육구 법률 변호인과 상담에서, 결정의 관련 부분에 대한 정보는 당사자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한 불만제기자가 아닌 피해자 및 그 결정 이행에 포함될 수 있거나 그 불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다. 불법적인 차별(차별적인 회롱,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와 같은)을 주장하는 불만에서 주장되는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교육구의 결정 통고서에는 주장되는 피해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피고에게 부과된 제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불만제기가 영어가 미숙한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된 학생이 학생의 15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이 영어 이외의 하나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또는 교육법 48985 에 의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 교육구는 영어 구사가 미숙한 학부모/후견인이 모든 관련 정보에 의미있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주 법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불만제기인에게 통지될 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 a. 불만 제기인은 교육구 불만제기 절차 이외에 그는 CDE 에 항소장을 접수한 뒤 일력으로 60 일 안에 중재 센터 또는 국선/사적 변호사의 도움을 포함하여 민법에서 가용한 구제 방법들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법 262.3)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 b. 주법원에 강제적 금지 구제를 추구하는 불만제기 또는 연방법에 근거해 차별을 고발한 불만제기인에게는 60 일 간의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법 262.3)
- c.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 성별, 장애 또는 나이에 근거해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 일 안에 미합중국 교육부 민권국, www.ed.gov/ocr 에 접수할 수 있다.

HSC 1596.7925 항에 준하여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한 UCP 불만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 또는 교육구 교육감 대리인의 해결안에 만족하지 않는 불만제기자는 해당될 경우, 지방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예정된 정기 청문회에서 지방 교육 기관의 이사회에 불만을 설명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언급.
2.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 또는 교육구 교육감 대리인에 의해 제안된 해결안에 만족하지 않는 불만제기자는 보고서 날짜의 30 일 이내에 주정부 공립 교육기관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알리는 언급
3. 불만제기자는 5CCR 4632 조항의 항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언급
4. 주정부 공립 교육 기관의 교육감 또는 그의 대리인은 5CCR 4633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주정부 교육위원회에 불만에 대한 근거, HSC 섹션 1596.7925 에 의한 주 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한 LEA 의 대응, 불만 및 그것의 해결책 또는 제안된 해결책 및 적절한 경우, 불만에 설명된 문제에 관해 LEA 의 해결안과는 다른 제안된 해결안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을 알리는 언급
5. LEA 는 학교의 카운티 교육감 및 해당될 경우, LEA 의 위원회에 분기별(4 회)로 주정부의 모든 유아원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불만의 성격과 해결책에 관해 요약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함을 알리는 언급. 요약서는 분기별로 LEA 의 집행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은 불만 건 수와 일반적 주제 부문 별 불만 건 수를 포함해야 한다.
6. 모든 불만 및 응답은 공공 기록임을 알리는 언급

지역사회 관계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

교정 조치

불만제기가 실제적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준법 사무관은 법에서 허용하는 적절한 교정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학교 또는 교육구 차원에 중점을 둔 더 큰 범위의 적절한 교정 조치에는 교육구 방침; 교사, 교직원 및 학생 훈련; 학교 방침 업데이트; 또는 학교 환경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립학교 또는 LEA 가 수유 중인 학생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 교육적 내용이없는 학과목 기간(9-12 학년 해당); 및/또는 위탁 양육 학생, 노숙 학생, 과거 청소년 법원 학생이었으나 현재 교육구 학교에 등록된 학생 및 군인 가족의 학생에 대한 불만에 실제적 사실이 있는 경우, 공립학교 또는 LEA 는 이 영향을 받은 학생에게 구제안을 제공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관련된 불만제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적절한 처리 방안들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 카운슬링
2. 학업 지원
3. 보건 서비스
4. 교내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보호인 배정
5. 가용한 자원 및 유사한 사건이나 보복을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6.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피해자 분리, 피해자에게 이러한 분리는 처벌이 아니라는 설명 제공
7. 정의 복원
8. 후속 조사 - 이러한 행위가 멈추었고 보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조사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 가해 학생에게 중점을 둔 적절한 교정조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1. 법에서 허용되는 학급 변경 또는 전학
2. 학부모/후견인 면담
3.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4. 긍정적인 행동 지원
5. 학생 성공팀 (SST) 의뢰
6. 가외활동이나 준-교과 활동 참여가 거부되거나 법에서 허용되는 다른 특권 취소
7. 법에서 허용되는 정학이나 퇴학과 같은 징계

직원이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구는 적용가능한 법과 단체교섭 합의에 의거해 최고 해고가 포함된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구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 행동 유형에 대해 학생, 직원 및 학부모/후견인들의 이해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보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넓게 학교 커뮤니티에서의 훈련과 중재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불만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처리 방안이 불만 제기자 또는 기타 다른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 비용, 보증금 및 기타 다른 요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수업시간 량(분 수) 또는 지역 콘트롤 책무안(LCAP)과 관계된 요건에 대한 법률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구는 주 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절차들에 따라 모든 피해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들에게 처리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1223, 52075)

학생 비용에 관한 법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해서 교육구는 불만제기 접수 이전 1 년의 기간 동안에 불법적인 비용을 지불한 모든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후견인들을 판별하고 전 금액 상환을 위해 선의를 갖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시도를 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 CCR 4600)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로의 항소

UCP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인 연방 또는 주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불만족하는 불만제기인은 교육구 결정을 수령한 후 일력으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CDE에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5 CCR 4632)

불만제기인은 결정에 대한 항소 근거 및 교육구 결정에서 사실들이 어떻게 부정확하고/또는 법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항소장에는 지역 교육구에 접수한 불만제기서 원본의 사본 및 해당 불만제기에 대한 교육구의 결정 사본을 함께 CDE로 보내야 한다. (5 CCR 4632)

불법적인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의 상대방이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불만족 시, 불만 제기자와 같은 방식으로 CDE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CDE로부터 불만제기인이 교육구의 결정에 항소하였다는 통지를 받으면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들을 CDE로 보내야 한다: (5 CCR 4633)

1. 최초의 불만제기서 사본
2. 서면 결정 사본
3. 사건 본질에 대한 요약 및 결정문에서 다루지지 않은 경우, 교육구에서 수행한 조사 범위
4. 당사자들에 의해 제출되었고 조사관에 의해 수집된 모든 메모, 면담 및 서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파일 사본
5. 불만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보고서
6.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사본
7. 기타 CDE에 의해 요청된 관련 정보

지역사회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규칙 승인: 08/1985

규칙 수정: 07/16/1991; 11/03/1992; 10/07/1997; 12/17/2002; 06/27/2006;
11/16/2007; 08/24/2010; 10/24/2011; 01/30/2014; 05/06/2014;
11/18/2016; 09/01/2017; 02/06/2018; 05/25/2018; 06/07/2019

(이전에 AR 1312)